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12-76
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2. 9. 10.
제안자 : 서종수위원 외 6인

1. 개정이유

의장·부의장의 선거방식을 의원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장·부의장 후보의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선거방식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영상의 효율성을 기하고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의장·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과 정견 발표를 명기함.

3. 관련법규

『지방자치법』 48조 및 제54조

4. 개정규칙안 : 별첨1

5. 예산조치 : 별도 추가되는 예산 없음

6. 기타사항 :

가. 입법예고 : 필요

나.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다. 관계법령 : 별첨2

서울특별시 마포구 규칙 제2012-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때에는” 을 “때에는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중” 으로 한다.

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후보자등록) ① 의장·부의장 후보자의 등록은 해당 선거일 10일 전부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의회사무국에 별지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후보자 등록 접수를 받지 아니한다.

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.

제6조의3(투표용지의 후보자 기재순위 등)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.

② 기호는 투표용지에 기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“1, 2, 3”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,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. 다만,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.

③ 후보자의 기재순위는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한다.

제6조의4(정견발표) 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, 발표순서는 제6조의3제3항에 따라

후보자의 게재순위로 한다.

②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40조제1항 단서 중 “기립표결”을 “기립 또는 거수표결”로 한다.

제48조 중 “간사와”를 “부위원장과”로 한다.

제58조제3항 중 “간사가”를 “부위원장이”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신 설>

제40조(표결방법)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. 다만, 투표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할 수 있다.

여야 한다.

②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“1, 2, 3”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,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. 다만,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.

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한다.

제6조의4(정견발표) 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, 발표순서는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후보자의 게재순위로 한다.

②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40조(표결방법) ① -----

----- 기립 또는 거수
표결-----.

② ~ ④ (생략)

제48조(의사일정과 개최일시)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최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.

제58조(위원회 회의록) ①·② (생략)

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·날인한다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48조(의사일정과 개최일시) --

----- 부위원장과 -----
-----.

제58조(위원회 회의록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 부위원
장이 -----.

【별첨2】

【관련법규】

ㄱ 제48조(의장·부의장의 선거와 임기) ①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·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·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. <신설 2011.7.14>

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<개정 2011.7.14>

ㄴ 제54조(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) 제48조제1항, 제52조 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선거(이하 이 조에서 "의장등의 선거"라 한다)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인, 최다선의원인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<개정 2011.7.14>